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사고



양 승 규
〈서울대법대 교수〉

I 머리말

불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이면서 또한 잘못 번질 경우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재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과학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전기, 가스, 석유 등을 이용하는 각종의 설비가 늘어나면서 화재의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의 분산을 꾀하는 화재보험을 활용하여야 하는 것을 당연한 요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화재보험의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도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볼 때 화재보험료는 손해보험의 총

수입보험료 1조2천3백49억9천5백만원의 0.7%인 8백76억8천9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전체 손해보험에서 자동차보험 등의 성장으로 화재보험의 비중이 낮아진 데에도 기인하겠으나, 시민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 화재보험의 이용이 낮다는 데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부딪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경제에서도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인간의 생활환경에서 화재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도사리고 있다. 그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화재보험을 이용하여 개인의 주택에 대하여도 위험에 대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화재보험의 중요요소인 화재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화재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 부터 일

〈표〉 화재보험 경과 손해율

〈단위 : 백만〉

년도	화 재			손해보험 합계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1983	72,092	37,377	51.8	674,275	496,331	73.6
1984	59,954	20,071	33.5	760,719	602,450	79.2
1985	63,583	17,262	27.2	851,817	626,858	73.6
1986	74,614	17,092	22.9	982,819	660,398	67.2
1987	87,689	41,828	47.7	1,234,995	841,902	68.2

정한 보험료의 지급을 받고, 보험의 목적에 화재라는 보험사고가 생김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8조, 883조) 즉 화재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전통적인 손해보험계약의 일종이다. 상법은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건물과 동산을 들고 있으나(상법 제685조), 이 밖에도 불에 탈 수 있는 유체물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가리지 않고 보험의 목적으로 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부보한 보험의 목적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것이 바로 화재보험계약이다.

이와 같이 화재보험은 보험의 목적인 물건에 생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므로 가령 가정생활보험보통약관이나 가정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화재, 도난, 폭발 등 여러가지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은 화재로 인한 손해보상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해서 화재보험으로 다룰 수는 없다. 그리고 화재보험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 도난이나 풍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그 위험을 담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그러한 위험을 화재보험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을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은 운송보험이나 해상보험의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가 여러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화재라는 한 가지 위험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라는 데에 그 특성이 있다.

화재보험도 보험의 목적이나 보험기간에 따라 보통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장기화재보험 등으로 세분되고 특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여기서 후자는 보험자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책임보험이 부가된 화재보험이라 할 수 있다.

Ⅲ. 보험사고

1. 화재의 의미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그 보험사고는 화재이다. 화재보험계약에서 말하는 화재는 보험의 목적을 소실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그 화재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화재라 함은 보통의 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한 연소력을 가진 연소작용으로 인한 재해 또는 사회통념상 화재로 볼 수 있는 성질과 규모를 가진 화력의 연소작용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독일화재보험약관 제1조2항 전단은 「화재(Brand)라 함은 일정한 불터(Herd)없이 생겼거나 또는 그 불터를 벗어나 생긴 불로서 독자적인 연소력을 가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화재라 함은 뜻밖의 곳에서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 나서 그것이 연소력을 가지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로 인한 손해라 하더라도 가령 보험의 목적이 난로불에 누렸거나 불뚱으로 흡이 생긴 것은 화재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없다.

프랑스 보험법 L122-1조 단서는 「화재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화재 또는 진정한 화재로 번질 화재의 개시가 없는 단순한 열의 작용이나 불 또는 백열물질의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가령 보일러의 자동급수 조절장치에 고장이 나서 과열로 기체가 손상된 경우 그것은 화재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없다. 다만 건물에 화재가 나서 가구가 연기로 그물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거나, 그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된다.(상법 684조)

1982년 9월 28일 손해보험요율심의위원회는 건조기 안의 여분이 불에 탄 사건에서 「가열로, Rotary 건조기, 흡입 Fan, Duct, 집진기, 굴뚝으로 구성된 일련의 건조장치에 있어서 가열로의 불길은 통상 Rotary 건조기 내부로 투입되거나 통과하지 않은 이상 가열로의 불이 건조기 내부로 옮겨 붙어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예정된 불자리를 이탈한 불로서 화재보험에서 담보되는 화재사고라 할 것이다」라

고 판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불길의 건조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Fan 등의 고장으로 과열되어 탄 것이라면 그것을 화재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불길의 건조기 안으로 직접 들어가 어분이 탄 것이라면 화재로 생긴 손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좋은 불과 나쁜 불

영국의 화재보험에서는 좋은 불(friendly fire)과 나쁜 불(unfriendly fire, hostile fire)로 나누어, 나쁜 불이라 함은 의도하지 아니한 곳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였거나 통상의 의미를 벗어난 화재를 뜻하고 있다. 영국에서 나쁜 불의 원리(hostile fire doctrine)가 나타난 것은 Austin v. Drew, 4 Campb. 360(1815) 사건에서 비롯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공장에서 정제하는 설탕이 과열과 열기로 손상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손해는 기계의 관리상의 과실로 생긴 것이고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Youse v. Employers Fire Ins. Co. 172 Kan. 111, 238 P. 2d 472(1951) 사건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인 사파이어반지를 화장지에 싸서 경대 모퉁이에 놓아둔 것을 화장지와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 쓰레기를 태움으로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법원은 「쓰레기소각장과 같이 의도된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점화한 불은 좋은 불이고, 보험의 목적인 사파이어 반지가 이러한 불로 손상되었을 때에는 보험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건, 즉 보석을 벽난로에 숨겨 두었다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불을 지피 보석이 손상되어 보험금을 청구한 Harris v. Poland (1941) 사건에서는 영국의 왕좌법관(King's Bench Division)은 「보험의 목적이 거실의 벽난로의 불로 파손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해이다」라고 판시하여 나쁜 불의 원리를 일축하였다.

아궁이나 난로의 불이 화재라는 관념은 상식적

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3. 화재의 원리

상법은 화재보험자가 보상할 손해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고 규정하여 그 화재의 원인을 묻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보험자는 가스의 폭발, 과열, 벼락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그 화재로 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을 위험보편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없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가령 전쟁을 원인으로 생긴 화재, 피보험자의 방화로 생긴 손해와 같이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다.

IV. 맺는 말

이상으로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인 화재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불은 우리의 생활에 필수적이면서도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 그리하여 불을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는 화재의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화재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같은 위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제도는 원래 위험단체를 전제로 효율적으로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분담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화재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동정에 의한 구제의 손길을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화재보험에 들어 두는 것이 이웃을 돕고, 또 스스로 예기하지 않던 화재를 당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임을 일깨워야 한다.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는 화재이고, 이 화재는 불로 인한 재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계를 잘못 다룬 결과 발생한 과열로 인한 기계의 손상은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화재사고라고 할 수 없은 당연한 것이고, 영국이나 미국에서의 「좋은 불」과 「나쁜 불」의 관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